

의안번호	2208683
의 퇴 인	안상훈 의원
회 답 일	2025.4.3.
추계번호	25C1294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0조의2 (아동권리보장원 의 설립 및 운영)	(제1항) 국가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권리보장원(이하 “보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함 (제5항) 국가는 보장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의2 (아동권리보장원 의 설립 및 운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의 취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아동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외에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동지원 예산의 안정성과 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
-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출연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관련 추계 시 필요한 정보, 즉 현행 국고보조금 외에 출연금을 통하여 수행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규모, 출연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은 국가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의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,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nabo.go.kr

[참고자료] 아동권리보장원 예산 산출 세부내역

(단위: 백만원)

'24년 예산		'25년 예산	
예산	산출내역	예산	산출내역
26,427	○ 민간경상보조(320-01) : 26,427백만원	28,038	○ 민간경상보조(320-01) : 28,038백만원
	① 인건비: 9,806백만원		① 인건비: 10,679백만원
	· 임원보수: 127백만원×2명=254백만원		· 임원보수: 140백만원×2명=281백만원
	· 직원보수: 56.2백만원×170명=9,552백만원		· 직원보수: 58.2백만원×170명=9,887백만원
			· 신규직원 보수: 34백만원×15명=511백만원(6개월분)
	② 관리운영비: 3,865백만원		② 관리운영비: 4,165백만원
	· 임차료: 2,484백만원×1개소=2,484백만원		· 임차료: 2,784백만원×1개소=2,784백만원
	· 시설장비 유지보수: 392백만원×1개소=392백만원		· 시설장비 유지보수: 392백만원×1개소=392백만원
	· 기본경비 등: 329.7백만원×3건=989백만원		· 기본경비 등: 329.7백만원×3건=989백만원
	③ 고유사업비: 12,756백만원		③ 고유사업비: 13,194백만원
	1) 아동정책개발 지원 및 역량강화(3,666백만원)		1) 아동정책개발 지원 및 역량강화(3,666백만원)
	가. 아동권리 증진 및 인식개선(502백만원)		가. 아동권리 증진 및 인식개선(502백만원)
	① 아동참여 활성화 및 아동권리 증진: 242백만원×1건=242백만원		① 아동참여 활성화 및 아동권리 증진: 242백만원×1건=242백만원
	② 어린이 주간 및 어린이날 개최: 260백만원×1건=260백만원		② 어린이 주간 및 어린이날 개최: 260백만원×1건=260백만원
	나. 아동정책 개발지원(1,090백만원)		나. 아동정책 개발지원(1,090백만원)
	① 아동정책 수립지원: 213백만원×1건=213백만원		① 아동정책 수립지원: 213백만원×1건=213백만원
	②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: 200백만원×1건=200백만원		②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: 200백만원×1건=200백만원
	③ 아동보호통합패널 구축: 677백만원×1건=677백만원		③ 아동보호통합패널 구축: 677백만원×1건=677백만원
	다. 아동복지 현장 종사자 역량강화(2,074백만원)		다. 아동복지 현장 종사자 역량강화(2,074백만원)
	① 가정위탁보호 업무 수행력 강화: 10백만원×1건=10백만원		① 가정위탁보호 업무 수행력 강화: 10백만원×1건=10백만원
	② 자립지원 종사자 역량강화: 179백만원×1건=179백만원		② 자립지원 종사자 역량강화: 179백만원×1건=179백만원
	③ 아동학대 대응 인력 전문성 강화: 1,885백만원×1건=1,885백만원		③ 아동학대 대응 인력 전문성 강화: 1,885백만원×1건=1,885백만원
	2) 공공아동보호체계 지원(3,809백만원)		2) 공공아동보호체계 지원(4,247백만원)
	가. 가정위탁보호제도 지원(456백만원)		가. 가정위탁보호제도 지원(456백만원)
	① 전문가정위탁제도 활성화: 23백만원×1건=23백만원		① 전문가정위탁제도 활성화: 23백만원×1건=23백만원
	②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: 42.2백만원×4건=169백만원		②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: 42.2백만원×4건=169백만원
	③ 가정위탁보호 업무 수행력 강화: 96백만원×1건=96백만원		③ 가정위탁보호 업무 수행력 강화: 96백만원×1건=96백만원
	④ 위탁아동 양육지원 기반 강화: 168백만원×1건=168백만원		④ 위탁아동 양육지원 기반 강화: 168백만원×1건=168백만원
	나. 지역 아동보호서비스 지원(350백만원)		나. 지역 아동보호서비스 지원(350백만원)
	① 아동보호체계 정책 지원: 50백만원×1건=50백만원		① 아동보호체계 정책 지원: 50백만원×1건=50백만원
	② 보호대상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: 300백만원×1건=300백만원		② 보호대상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: 300백만원×1건=300백만원
	다. 입양정책지원(3,003백만원)		다. 입양정책지원(3,441백만원)
	① 국내입양 활성화 및 사후관리: 2,010백만원×1건=2,010백만원		① 국내입양 활성화 및 사후관리: 1,100백만원×1건=1,100백만원
	②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: 993백만원×1건=993백만원		②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: 2,341백만원×1건=2,341백만원
	3) 아동돌봄 및 자립지원(2,662백만원)		3) 아동돌봄 및 자립지원(2,662백만원)
	가. 마을돌봄서비스 지원(1,708백만원)		가. 마을돌봄서비스 지원(1,708백만원)
	① 마을돌봄서비스 운영 역량 강화: 941백만원×1건=941백만원		① 마을돌봄서비스 운영 역량 강화: 941백만원×1건=941백만원
	② 마을돌봄 현황 분석 및 인식개선: 567백만원×1건=567백만원		② 마을돌봄 현황 분석 및 인식개선: 567백만원×1건=567백만원
	③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: 200백만원×1건=200백만원		③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: 200백만원×1건=200백만원
	나.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(239백만원)		나.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(239백만원)
	① 사업운영 평가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: 168백만원×1건=168백만원		① 사업운영 평가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: 168백만원×1건=168백만원
	② 드림스타트 정책연구 등: 71백만원×1건=71백만원		② 드림스타트 정책연구 등: 71백만원×1건=71백만원
	다. 아동자립지원(715백만원)		다. 아동자립지원(715백만원)
	① 자립취약아동 맞춤형 자립지원: 62백만원×1건=62백만원		① 자립취약아동 맞춤형 자립지원: 62백만원×1건=62백만원

'24년 예산		'25년 예산	
예산	산출내역	예산	산출내역
	②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: 602백만원×1건=602백만원 ③ 아동자산형성 지원: 51백만원×1건=51백만원 4) 아동학대 예방 및 실종아동 보호 지원(2,619백만원) 가.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(1,743백만원) ① 학대대응 미래과제 발굴: 25백만원×1건=25백만원 ② 아동학대 대응 사업 수행 표준화: 225백만원×1건=225백만원 ③ 아동학대 대응 인력 전문성 강화: 406백만원×1건=406백만원 ④ 아동학대 예방 인식증진: 1,087백만원×1건=1,087백만원 나.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(876백만원) ① 실종아동 정보관리 및 정책지원: 114백만원×1건=114백만원 ② 실종아동예방 교육 및 홍보: 595백만원×1건=595백만원 ③ 실종아동 등 가족지원: 167백만원×1건=167백만원		②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: 602백만원×1건=602백만원 ③ 아동자산형성 지원: 51백만원×1건=51백만원 4) 아동학대 예방 및 실종아동 보호 지원(2,619백만원) 가.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(1,743백만원) ① 학대대응 미래과제 발굴: 25백만원×1건=25백만원 ② 아동학대 대응 사업 수행 표준화: 225백만원×1건=225백만원 ③ 아동학대 대응 인력 전문성 강화: 406백만원×1건=406백만원 ④ 아동학대 예방 인식증진: 1,087백만원×1건=1,087백만원 나.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(876백만원) ① 실종아동 정보관리 및 정책지원: 114백만원×1건=114백만원 ② 실종아동예방 교육 및 홍보: 595백만원×1건=595백만원 ③ 실종아동 등 가족지원: 167백만원×1건=167백만원

자료: 보건복지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